

家庭生活의 민주化

韓國的인 家庭 環境을 中心으로

教師

趙

昌

鎬

1

우리의 憲法이나 制度와 같은 모든 形式이 아무리 民主的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運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反民主的인 結果를 낳게 한다. 무릇 民主主義 社會의 完成은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의 性格이나 敎養에 左右된다. 그리고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의 性格을 形成시키는 데 重要的 作用을 하는 곳이 家庭이라면 우리는 이 家庭을 中心으로 하는 社會生活의 民主化가 무엇 보다도 重要視되는 것이다. 마치 새 環境속에 세워진 것만으로서 그 環境의 主人이 될 수가 없고 自己 스스로의 努力으로 이루어는 새 環境이라야만 그 環境의 主人이 될 수 있듯이 참된 民主主義의 社會完成은 民主主義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의 敎養이라 할지 性格이 民主主義로 一貫되어 있는 사람들로 建設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人間이 만들어지려면 그 사람으로서의 가장 가까운 環境이 民主主義的인 것이어야 하

는 바 바로 그것은 家庭이며 우리 生活의 本據地인 家庭의 民主化가 極히 重要的 問題로 되는 것이며 民主主義의 完成을 指向하는 國家로서 이 家庭生活이 어떠한지 해야 한다는 데 對해 重大한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二十世紀의 憲法의 特徵은 國家가 積極的으로 國家權力에 依하여 國民의 自由權利를 保障하며 그것의 實現을 돕는 데 있다.

집안의 일이라 하여 집안에서만 解決하며 집안사람만의 生覺으로 處理하는데 放任하여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個人의 行動이나 思考方式이 는 國家社會의 思考 內至 行動으로서의 政治와 關係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은 이 습과 傳統으로서 남아 있는 封建的인 家族關係는 極히 非民主的인 道德이나 風習의 힘에 依하여 사람들의 私的生活을 完全히 非民主的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社會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封建的인 모든 것을 쫓아 버리지 않는限 우리나라의 民主主義化는 一步의 進展도 期待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 現行 憲法이나 新民法이 從來의 家族主義의 封建性을 벗어나게 하기 爲한 民主化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社會에서 活動하는 公民으로서는 平等하지만 家族生活內의 私人으로서는 오랜 傳統的 封建性을 脫却하지 못하고 있는 極히 不平等한 家庭生活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家庭生活에 있어서 먼저 집이라고 하는 機構가 있고 그 집안에는 「身分」이라는 것이 定하여 있는 것이 普通이다.

이러한 身分에는 上下의 支配服從의 關係에서 있다. 卽ち 各 집에는 「戶主」라고 하는 身分의 所有者가 있으며 戶主는 「家長」으로서 「家族」으로서의 身分을 가진 家族員을 統率한다.

家族은 結婚하는 일에도 養子를 세우는 일에도 戶主의 同意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戶主는 또한 家族員에 對하여 그의 居所를 指定하는 權利가 있으며 때로는 分家を 強制하는 權利가 지도 行使한다. 이러한 戶主의 家族을 支配하는 權能을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것은 戶主의 家長으로서의 身分이 가지는 權威에서 오는 것이다. 그 戶主가 어른이 되는 그 집이란 무엇이냐 하면 官公所에 갖추어는 戶籍이라고 하는 書類上 쓰여 있는 집이며 金氏라느니 李氏라느니 하여도 이 草家집 저기와 있었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觀念上으로 만들어는 잡이며 그러한 집의 어른인 戶主의 權力이 家族을 現實的으로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戶主로서의 身分은 戶主 相續이라는 制度 밑에서

家族中 오직 한 사람인 普通 말아들에게 있게 한다. 또한 집안의 身分으로는 「夫」라고 하는 身分 「妻」라고 하는 身分이 있지만 舊民法下에서는 妻는 夫의 權力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었고 또한 「親」이라는 身分과 「子」라는 身分사이에 도 支配 服從의 關係가 強하게 나타났던 것이며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두드러진 事實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制度가 얼마나 民主主義原理에 背馳되고 있는가 함은 能히 알 수 있을 것이다. 戶主도 家族도 夫도 妻도 親도 子도 모두 「個人」으로서는 같은 것이며 다같이 人間으로서의 尊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새로 改正되는 憲法은 第八條에서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敬과 價値를 가지며……」라고 規定하고 또 現行 憲法 第九條에서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趣旨에 따라 新民法의 親族相續이 規定되어지는 것은 勿論이나 個人의 尊敬이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는 從來의 家族制度는 그 封建性이 事實上으로도 民主化될 것이 要請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따뜻한 生活의 보금자리인 家庭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다. 家庭에 있어서의 父母 兄弟 其他 相互間의 아름다운 關係는 다만 法律에 依해서 強制된다는지 制度이 自體를 爲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個人의 높은 道德心 또는 보다 더 崇高한 信仰心에 依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法이나 制度의 權威에 依해서 지킬려고 하는 家庭生活은 自然 權威의 인 것이 支配하게 되는

것이며 上下의 支配服從의 封建性을 띠게 마련인 것이다. 從

來의 「집」을 中心으로 存在하는 「戶主」 「家族」이라는 身分關

係가 法的으로 消滅되었다는 事實이 問題가 아니된다. 또는

「妻」는 夫權 밑에 매여 있는 無能力者」라고 하는 陳陳스런 說

에게 法的 保護가 그리 重要한 것이 아니다. 다만 個人의

尊敬이라는 것과 함께 「男女의 本質的 平等이 強調됨으로써」

夫」와 「妻」와의 사이에 差別없는 實生活이 되어야 한다. 相續

面에 있어서나 親子關係에 있어서이전 封建性을 法的으로 消

滅시켰다고 하여 足한 것은 아니다. 親權도 個人의 尊敬이

라는 基本精神으로서 그 內容을 갖추어야 하며 子息은 父母

의 것이라는 生覺을 버리고 子息을 養育하며 監督保護하는 것

이 父母로서의 自然의 權利라 생각하여야 하며 그와 同時에

子息을 自由스런 人格을 가진 社會의 個人으로서 社會에 보낸

다는 義務感을 父母는 모름지기 가져야 하는 것이다. 親子關

係에 對하여 法律은 여러가지로 塔치고 있지만 일단 成長한

子息은 自由스런고 獨立한 社會人으로서 父母와 同等한 立場에

서게 하여 이로부터 일어날 모든 일은 民主主義社會의 道德의

世界에 맡겨 버리는 것이다.

4

참으로 自由스런고 平等한 人間은 서로가 남의 人格을 尊重

하는 同時에 能力이나 知識經驗에 있어서 自身보다도 높고 높

은 다른 사람의 指導 밑에 있게 되므로서 民主主義社會의 秩序

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家庭이 정말로 民主主義的인 共同

生活을爲한 團體라 한다면 家庭의 自由와 平等과 秩序는 民

主主義精神으로 꿰뚫인 道德이나 信仰에 맡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 國家로서의 우리나라는 法律에 依해

서 家庭生活이 어떠한지 한다는 規制方式을 取하지 아니하였

고 또한 그리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納得하고 自進하여 이루어 나감으로써만이 眞正한 民主主義社

會의 建設이 實現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努力의 過程

에서 있을 때 사람들은 참된 民主主義精神을 體驗하고 몸에

배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만드느 것임과 같이 불행도 내 자신이 만들 뿐이

요. 또 치료할 뿐이다.

마음의 姿勢

내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라.

그러면 그대의 표정도 평화롭고 화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다.

몸이 굽으니 그림자도 굽다.

어찌 그림자 굽은 것을 한탄할

것인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

의 불행을 치료해 줄 사람은 없다. 행복은 내 마음

애로 위 질것이다.

— 파스칼 —